# 2025년 11월 직원교육

개인정보보호지침 및 재해대응 안전관리교육

- 일　　시 : 2025. 11. 20. (18:30~19:00)
- 진행방법 : 카톡 단체 채팅방 이용한 비대면 교육
- 대　　상 : 제천시방문요양센터 전 직원

# 제천시방문요양센터

# 개인정보 보호지침

○ 개인정보

**‘개인정보’란 살아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을 포함**

##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다.

❶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❷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❸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❹ 정보주체와의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필요한 경우
❺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❻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명백하게 정보주체의 권리보다 우선하는 경우. 이 경우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과 상당한 관련이 있고 합리적인 범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

▶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제1호에 따른 동의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를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❶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❷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
❸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❹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1. 개인정보의 이용목적

이용하는 개인정보는 다음의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이용되지 않으며, 이용목적이 변경될 시에는 별도의 동의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

가. 수급자의 장기요양급여 제공
나. 채용, 재직, 퇴직 등의 단계별 인사처리
다. 후원자, 자원봉사자 등록, 참여 관리
라. 민원에 대한 사무처리 및 고지사항 전달 등을 위한 원활한 의사소통 경로의 확보

## ● 개인정보 수집 항목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그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하여야 한다. 이 경우 최소한의 개인정보 수집이라는 입증책임은 개인정보처리자가 부담한다.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 외의 개인정보 수집에는 동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알리고 개인정보를 수집하여야 한다.

- 정보주체(이용자, 입소자, 근로자 등)의 동의를 받은 경우
-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 준수를 위해 불가피한 경우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시설입소자 및 퇴소자의 명부, 노인복지법에 따른 시설입소자 및 퇴소자의 명부,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명부 및 임금대장 등)
-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필요한 경우 성명, 연락처, 보호자 성명 및 연락처, 등급 등은 계약체결 및 이행을 위해 불가피하게 필요한 정보에 해당

장기요양급여제공 등을 위하여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

가. 수급자 개인정보 : 입소, 퇴소 등 장기요양기관 이용 수급자 · 신원인수인 정보
나. 이용료 수납(신용카드 결제 시)
- 필수항목 : 카드사명, 카드번호 등 결제 승인정보
다. 근로자의 개인정보 : 채용, 재직, 퇴직 등의 단계별 인사정보
라. 후원자/자원봉사자 개인정보 : 등록, 참여 등 개인정보
마. 방문자 개인정보 : 방문자의 기록 정보

| | | |
|---|---|---|
| 이용자 | 장기요양인정서 정보 | 인정서 등급 및 유효기간 |
| | 표준장기이용계획서 정보 | 급여종류 및 내용 |
| | 본인부담금 감경여부 확인을 위한 정보 | 감경율 확인정보 |
| | 입소보고 및 의료비 공제 | 주민등록번호 |
| 보호자 | 청구 및 연락을 위한 정보 | 이름, 전화번호, 주소, 관계 |
| | | 계좌번호 등 결제정보 |
| 신청인 기재사항의 성명, 주소, 연락처, 고유식별정보(생년월일), 장기요양인정번호, 건강 및 질병이력, 신체상태변화, 가족 및 보호자 정보(성명, 연락처 및 주소), 장기요양급여 자격결정 및 수혜이력, 영상정보 처리 기기장치(CCTV) 관련 정보, 기타 목적사업 수행에 필요한 정보 등 | | |

## ●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보유기간의 경과,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달성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개인정보를 파기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개인정보처리자가 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를 파기할 때에는 복구 또는 재생되지 아니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법령에 따른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또는 정보주체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시에 동의받은 보유・이용기간 내에서 개인정보를 처리・보유.
가. 장기요양급여 제공을 위하여 수집한 정보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등에 명시된 보관기간 (5년).
나. 근로자의 개인정보: 근로기준법 등에 명시된 보관기간. (3년)
다. 설문조사, 행사 등의 목적을 위하여 수집된 경우 : 해당 행사 등이 종료된 때.

| | |
|---|---|
| 개인정보 보유기간 | 서비스 제공계약 해지로부터 5년 후 폐기 |
| 개인정보 이용기간 | 수급자 계약해지 시까지 |

▶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처리방침에서 고지한 범위 내에서 사용하며, 동 범위를 넘어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아래의 경우에는 예외.
가.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나.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 개인정보의 파기

- 개인정보 보유기간의 경과, 처리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
- 개인정보가 더 이상 불필요하게 된 때에는 파기를 시킴으로써 유출・오용 가능성을 미연에 방지하여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려는 것임

▶ 개인정보의 안정성 확보 조치

가. 관리적 조치
 - 개인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하여 고객의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및 관리에 필요한 절차를 마련하여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이를 숙지하고 준수하도록 교육.

나. 기술적·물리적 조치
- 개인정보 처리시스템 및 개인정보취급자가 개인정보 처리에 이용하는 정보기기에 컴퓨터바이러스, 스파이웨어 등 악성프로그램의 침투 여부를 항시 점검.

| 안전성 조치 | 내용 |
|---|---|
| 관리적 조치 | ▹ 개인정보 교육 및 지침자료 비치 |
| 기술적 조치 | ▹ 접근 권한의 관리<br>▹ 비밀번호 관리<br>▹ 보안 프로그램의 설치 및 운영 |
| 물리적 조치 | ▹ 개인정보의 안전한 보관을 위한 보관시설<br>▹ 잠금장치 설치 |

# 재난상황 대응지침

## ● 재난상황 대응원칙

○ 상황 발생 시 수급자의 **안전한 대피** 및 **구조를 최우선 수행**

○ 수급자의 취약 특성을 고려하여 **이동서비스 지원, 기저질환 등 건강 관리에 대한 의료지원, 돌봄 공백 방지 대책 수립**

○ **재난상황 정보 인지**

- 시설 직원은 **재난 상황에 대한 정보**를 TV, 라디오, 인터넷 등을 통하여 **수집**하고 **수급자에게 재난상황에 대해 정확하게 알림**

○ **재난상황 업무조치**

- 재난 발생에 따른 **시설 직원들의 담당 업무 내용을 확인**
- **야간이나 휴일의 경우**에는 소집기준에 따라 **직원들을 소집**

○ **연락체계 점검**

- **지자체, 소방, 경찰, 응급의료, 건보공단 등 연락체계를 구축**하여 비상시 신속하게 출동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유지
  * 재난상황 발생시 즉시 **관할 지자체 및 건보공단**으로 상황보고

- 수급자의 **보호자 및 가족 등에게도 사전에 연락처를 확보**하여 비상시 신속하게 연락할 수 있도록 준비

- 야간에 재난 발생 시, 시설 주변 **의용소방대원**들이나 **일반 주민들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연락처를 사전에 확보**

● **재난대비훈련 시 종사자의 행동요령**

| 구분 | | 내용 |
|---|---|---|
| 대피훈련행동 | 훈련사항 | ① 보행이 어려운 어르신은 종사자의 도움을 통해 대피함<br><br>② 보행이 느린 어르신(좌측)와 빠른 어르신(우측)를 구분하여 대피<br>⇒ 계단에서 정체 또는 내려오는 속도가 다름으로 인해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음<br>단, 실제 상황 시 화재진압 및 구조를 위한 소방관의 통로가 확보.<br><br>③ 휠체어를 이용하는 어르신과 보행이 가능한 어르신의 피난로를 경사로와 계단으로 구분하여 실시하는 것도 필요함<br>⇒ 화재 시, 연기로부터 안전한 외부경사로 및 외부계단으로 우선 대피함<br><br>④ 어르신 정보(이름, 건강정보, 비상연락망 등)를 명찰로 작성하여 패용하는 습관을 기르도록 하는 것도 필요함<br>⇒ 실제상황에서 종사자와 분리된 경우 구호기관에서 빠른 신원파악과 의료조치<br><br>⑤ 실내에서 신발을 신고 있지 않는 경우 훈련 시 신발을 신는 행동으로 대피가 지체 되지 않도록 실내화, 덧신 등을 바로 활용될 수 있도록 비치하고 훈련해야함 |
| | 실제사항 | ① 겉옷, 양말 등을 활용하고 물에 적실 수 없는 상황인 경우 침을 이용하여 최대한 연기를 마시지 않도록 교육해야함<br>- 휠체어를 이용하는 어르신을 위해 물에 적실 화재대피용 담요구비 필요함<br><br>② 평소에 금일 방문자, 보호자 등 재실인원이 확인되도록 해야함 |
| 시설물관련사항 | 훈련사항 | ① 계단높이가 높은 경우,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행속도를 조절<br><br>② 어르신을 위한 계단손잡이 설치 유무에 따라 보행 속도를 조절해야함<br><br>③ 미닫이문(미서기문)이 설치된 경우 실제 상황 시 실내에서 밖으로 밀어서 여는 여닫이문보다 정체현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훈련 시 문을 여는 행동 포함 필요<br>⇒ 자동문이 설치된 경우 암전 시 수동으로 열 수 있는 방법을 알아야함 |

| | | |
|---|---|---|
| | | ④ 실내에서 외부 출입구까지 복도의 전환(꺾임, 미로), 가구들로 인한 복도 협소 및 차폐(시야미확보)로 정체현상과 탈출구 방향 확인의 어려움을 고려하여야 함<br><br>⑤ 시설에 비해 재실인원이 많은 경우 대피 계획 시 계단 및 출구에 대응하는 적정 인원을 배분하여 원활한 대피 |
| | 실제사항 | ① 옥상층 대피 시 문이 잠겨 있는 경우를 대비하여 모든 종사자가 열쇠의 위치 또는 비밀번호를 공유해야함<br><br>② 대피 후 최종 피난장소가 협소한 경우 소방관의 화재진압 동선과 충돌할 우려가 있음에 대한 고려 필요.<br><br>③ 비상셔터 위치를 알려 화재 시 당황하지 않도록 해야 하며, 대피 시 방화문은 꼭 닫아야함을 교육하여야함 ⇒ 특히 시각장애가 있는 어르신 |

● 화재발생시 대피방법

- 불을 발견하면 '불이야' 하고 큰소리로 외쳐 다른 사람에게 알리고 화재경보 비상벨을 누릅시다.






- 직원은 어르신을 안전하게 대피 시킨다.
-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지 말고 계단을 이용하되 아래층으로 대피가 불가능한 때에는 옥상으로 대피 시킨다.

○ 수급자 대응방안

- 불길 속을 통과할 때에는 물에 적신 담요나 수건 등으로 몸과 얼굴을 감싸주세요.
- 연기가 많을 때는 한 손으로는 코와 입을 젖은 수건 등으로 막고 낮은 자세로 이동합시다.
- 방문을 열기 전에 문손잡이를 만져 보았을 때 뜨겁지 않으면 문을 조심스럽게 열고 밖으로 나갑시다.
- 출구가 없으면 연기가 방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물을 적셔 문틈을 옷이나 이불로 막고 구조를 기다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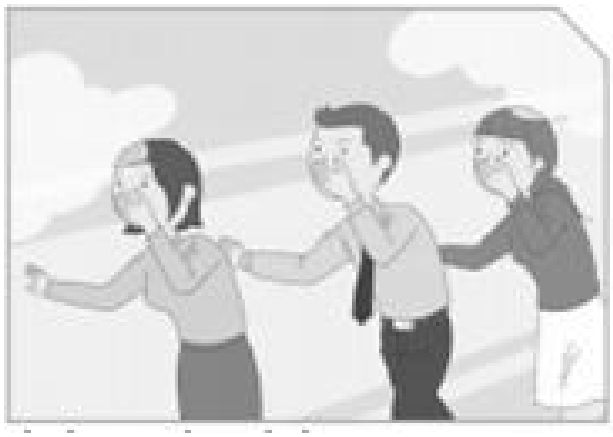



○ 소화기 사용법

1. 소화기를 불이 난 곳으로 옮깁니다
2. 손잡이 부분의 안전핀을 뽑습니다.
3. 바람을 등지고 서서 호스가 불을 향하게 합니다.
4. 손잡이를 힘껏 움켜쥡니다.
5. 분말을 빗자루로 쓸 듯이 골고루 뿌립니다.




- 소화기는 잘 보이고 사용하기에 편리한 곳에 두되 햇빛이나 습기에 노출되지 않도록 합니다.
- 분말소화기는 분말이 굳지 않도록 점검 합니다.

△ 투척용 소화기 사용법

- 투척용 소화기는 평상시 위치를 확인하고 사용법을 숙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 고정틀에서 소화기를 꺼내 든다.
- 소화기를 불이 난 곳 중심으로 던진다.

● 감염병 발생 양상에 따른 주요 조치내용

| 발생 양상 | 상 황 | 주요 조치내용 |
|---|---|---|
| 어르신 발생 시 | - 의심 또는 확진<br>어르신 1명 발생 | 감염병 어르신(유증상자 포함) 관리<br>접촉자 관리 및 추가 발병자 파악<br>보건소 신고(관내 운영센터 신고)<br>감염병 예방 및 발생 시 대처요령 교육 |
| 감염병 확산 시 | -의심 또는 확진<br>어르신 2명 이상 발생<br>-전체 인원의 5% 발생 | 감염병 어르신(유증상자 포함) 관리<br>감염자 조기격리 및 유증상자 관리<br>보건소 신고(관내 운영센터 신고)<br>시설물 및 취약지역 소독, 방역 실시 |

○ 장기요양기관 감염병 발생 시 대응체계

1). 어르신 발생 감염병 유증상자의 조기발견

- 감염병 발생이 의심되는 어르신이 발생하였을 때 즉시 보호자에게 안내 후 보건소 및 의료기관에 연계한다.
- 간호사는 해당 어르신에 대하여 일시적으로 격리조치 후 감염병의 감염 유무를 관찰한다.
- 감염병이 의심되는 어르신, 종사자에 대하여 간호사는 보호자에게 연락 후 병원 진료를 의뢰하고 시설장은 병원이송 전까지 해당 어르신을 격리조치 할 수 있도록 한다.
- 감염병이 확진된 어르신에 대해서는 완치되고 전염력이 사라질 때까지 시설 내 입소를 중지한다.

2). 감염병 접촉자 조사

- 간호사는 감염병 확진(의심) 어르신과 접촉한 어르신 및 종사자를 파악하여 증상이 발생하는지 여부를 감염병의 잠복기간 동안 추적 관찰한다.
- 간호사는 감염병 확진(의심) 어르신과 밀접한 접촉이 있는 대상자에 대하여 필요시 보건소에 알리며, 또한 매일 유증상자가 발생하였는지 확인하고 조치 및 보고한다.

3). 보고

- 간호사는 장기요양기관 내 어르신 및 종사자에 대하여 감염병 확진(의심)여부를 지속 관리・확인하며 상황발생 시 즉시 기관장에게 보고한다.
-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감염병 확진(의심) 어르신 및 종사자 발생 즉시 보건소 통보 및 관할 지방자치단체・건보공단(장기요양운영센터)에 보고한다.

4). 확산방지

- 장기요양기관 감염병 예방을 위해 현재 발생한 감염병의 특징, 의심 증상 및 예방법, 손 씻기 등 개인위생 수칙에 대해 어르신 및 종사자를 대상으로 교육하고, 상황에 따라 보호자 교육 및 정보제공을 위하여 안내문을 발송할 수 있다.
- 방역기관의 협조를 받아 장기요양기관 내/외 방역소독을 실시한다.
- 감염병 어르신이 발생한 침실은 소독제(알코올, 차아염소산나트륨 또는 유사 환경 소독제)를 이용하여 침실 침대, 창틀, 사물함, 출입문 손잡이, 화장실 손잡이 등 모든 사물을 닦아 소독한다. 또한 필요시 확산 방지를 위하여 전문 방역기관에 방역을 의뢰하거나 침실을 포함한 장기요양기관 내부의 감염병 병원체에 오염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물체 표면을 닦아 소독할 수 있도록 한다.
- 감염병 어르신 발생 침실은 어르신임이 의심되었을 때부터 즉시 소독 및 방역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한다.
- 감염병의 심각성 및 확산 정도에 따라 단체 활동을 자제하거나 연기하며 손 씻기, 기침예절 등에 대하여 반복적으로 교육・게시한다.
- 보건소 및 방역당국의 역학조사에 적극 협조한다.

| 구분 | 조치사항 |
|---|---|
| 감염병 유 행 | 직원 및 방문객 발열 확인, 실내 추가 소독, 위생용품 비치, 감염병 예방 추가 교육, 수급자 및 직원 독감 예방접종, 방역지침 준수(손소독, 마스크 착용 등) 등 |
| 감염병 발 생 | 수급자 증상사정, 보호자 안내, 보건소 보고 및 신고, 병원 이송 등 |

● 지진 발생 시 상황별 행동요령

# 지진 발생 시 상황별 행동요령

지진 발생 순간에는 적절한 판단이 어려우므로, 평소에 행동요령을 숙지하여 대응합니다.

행정안전부
Ministry of the Interior and Safety

## 지진으로 흔들릴 때는?



지진으로 흔들리는 동안은 **탁자 아래로** 들어가 몸을 보호하고, 탁자 다리를 꼭 잡습니다.

## 흔들림이 멈췄을 때는?



흔들림이 멈추면 **전기와 가스를 차단**하고, 문을 열어 **출구를 확보**합니다.

## 건물 밖으로 나갈 때는?



건물 밖으로 나갈 때에는 **계단을 이용**하여 신속하게 이동합니다. **(엘리베이터 사용 금지)**

※ 엘리베이터 안에 있을 경우에는 모든 층의 버튼을 눌러 먼저 열리는 층에서 내립니다.

## 건물 밖으로 나왔을 때는?



건물 밖에서는 가방이나 손으로 **머리를 보호**하며, **건물과 거리를 두고** 주위를 살피며 대피합니다.

## 대피 장소를 찾을 때는?



**떨어지는 물건에 유의**하며 신속하게 운동장이나 공원 등 **넓은 공간**으로 대피합니다. **(차량 이용 금지)**

## 대피 장소에 도착한 후에는?




라디오나 공공기관의 안내 방송 등 **올바른 정보**에 따라 행동합니다.

http://www.mois.go.kr

● 전기, 가스안전관리 행동요령

## 전기안전관리

**전기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이런 활동이 필요**

•노후전선은 확인 후 즉시 교체
•하나의 콘센트에 여러 개 코드 동시 사용금지
•콘센트 구멍을 뚜껑으로 막을 수 있는 구조로 변경
•전기를 사용하는 난방기구 사용 통제
•누전차단기의 도입과 정기적인 청소실시
•선풍기나 TV에 묻어 있는 오래된 먼지 제거

**전기가 들어오지 않으면 이렇게 대응하세요**

•태풍이나 홍수로 침수된 지역에서는 누전차단기 점검 필수
•지진·화재와 같은 재난 시 전원스위치 차단
•정전이 발생한 경우는 인접지역 동시 정전여부 확인
•자기 시설만 정전인 경우는 누전차단기 점검 필요

**전기안전사고가 종료된 후 행동수칙은?**

•가스 누설여부를 확인한 후 전기 스위치 작동 필요
•침수된 가전제품은 수리 후 사용
•전기제품·전기설비는 이상유무를 전문가 의뢰 후 사용
•물 묻은 손으로 전기를 만지지 말것

## 가스안전관리

**가스안전사고 예방활동은 이렇게 하세요**

•가스에 대한 위험성을 수시로 교육 필요
•정기적으로 가스의 누설여부 점검
•가스 보일러실 주변에 불에 잘 타는 물건 적치 금지
•가스배관 주변의 누설여부 수시 점검
•가스저장탱크는 흔들리지 않도록 단단히 고정

가스누설이나 가스경보가 울리면

**어떤 행동이 필요한가?**

•가스 중간밸브를 모두 차단하고 전기스위치를 만지지 않음
•창문을 열고 수건이나 부채와 같은 도구로 가스를 배출시킴
•선풍기를 이용한 환기는 절대 금물
•가스흡입으로 정신없는 자는 신선한 공기 있는 곳으로 이동
•소방서나 도시가스 취급소로 즉시 신고

**가스안전사고가 모두 정리된 후 행동수칙은?**

•가스가 누출되었던 실은 완전 환기 후 입실토록 조치
•홍수나 태풍으로 침수된 지역에서는 전문가 확인 후 사용